



##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업무지침

### 1. 목적

본 지침은 공정거래+위원회 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운영지침」을 준용하여 엠이엠씨코리아(주)(이하 '당사')의 협력업체 선정(등록)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2. 용어의 정의

- (1) "협력업체"라 함은 당사의 제조·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- (2) "협력업체 풀(Pool)"이라 함은 당사에 소요되는 원, 부자재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사가 제정한 [구매관리 프로세스, 공급자 품질관리 절차]에 따라 관리·운영하는 인증된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- (3) "협력업체 선정"이라 함은 당사의 ERP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(4) "협력업체 운용"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Pool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### 3. 협력업체 선정·운용 지침

#### 3-1. 기본원칙

이 운영지침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,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제정[구매관리 프로세스, 공급자 품질관리 절차]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
#### 3-2. 협력업체 선정·운용 기준 및 절차

##### 가. 협력업체 선정·운용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

- (1) 협력업체 선정·운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 또는 30일전에 서면(전자메일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대상업체에 공지한다.
- (2) 협력업체 선정·운용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



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.

- (3) 협력업체 선정일 및 협력업체 풀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**나. 선정 · 운용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**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 · 운용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다. 협력업체 선정 · 운용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**

(1)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.

- ① 기존 업체보다 품질,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
- ② 기존 업체의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
- ③ 기술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,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,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 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
- ④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
- ⑤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
- ⑥ 분사,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
- ⑦ 기존에 Agency, 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 등록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
- ⑧ 기존 제품에 대해 새로운 Model 및 Material로 변경하고자 할 때
- ⑨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

(2)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.

- (3)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(4)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.

#### **라. 협력업체 등록 절차 및 평가방법**

- (1) 품목별 분류 및 평가방법

품목 분류	협력업체 인증 (구매 부문)	협력업체 인증 (품질 부문)	현업부서 평가표	서류 대체
원, 부자재	○	○	X	X
일반구매품 (일반소모품)	X	X	X	○
예비품 (Spare Parts)	X	X	X	○
장비유지보수	X	X	X	○
환경 분야	X	X	○	X

(2) 품목별 세부 평가방법

구분	평가방법
원, 부자재	대상자 선정 후 기술 부서에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, Sample Test 완료 단계에서 협력업체 인증평가(품질부문/구매부문)를 진행한다.
일반구매품 (일반소모품)	업체소개서, 공급자 일반현황, 대리점 인증서 또는 계약서 등의 문서로 대체하여 검토 후 등록한다. 단, 현업부서의 요청이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협력업체 인증평가 대상에 포함한다.
예비품 (Spare Parts)	
장비유지보수	
환경 분야	각 요청 팀에서 평가표에 따라 1차 평가하고, 구매부서에서는 1차 평가표에 근거하여 최종 평가 후 거래 업체를 선정한다.

(3) 협력업체 인증 절차

- ① 업체선정 → ② 샘플평가 → ③ 협력업체 인증평가(방문 실사평가 등)→ ④ 제품 및 업체 승인 → ⑤ 승인결과 협력업체 통지 → ⑥ 업체등록 및 계약체결

※ 업무 효율 및 필요에 따라, 순서는 변경 가능

(4) 협력업체 인증평가 항목

- 품질 부문 : 품질시스템의 구축상태,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, 제품/공정 관리, 제품의 취급 및 운반 등 전반적인 품질시스템 운영 실태 평가(방문실사평가 등)
- 구매 부문 : 품질부문 평가 결과, 경영일반, 환경안정평가, 기술평가, 생산평가 등 관련팀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평가

(5) 협력업체 평가 기준 및 조치사항

평가 점수	협력업체 인증평가	협력업체 사후평가	비고
80 점 이상	인증 적격 업체	필요 시	협력업체 사후평가는 품질부서의 평가와는 별개로 구매부서에서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음
70 점 이상 80 점 미만	조건부 인증 (30 일 이내 개선대책 보완)	년 1 회 평가	
60 점 이상 70 점 미만	미승인 (60 일 이내 개선대책 보완 시 현장 검증 후 재검토)	6 개월 후 재평가	
60 점 미만	미승인	승인 취소	

### (6) 품목별 접수 문서

구분	문서	원, 부자재	장비	공사	Spare parts /제작품	일반구매품 (공구 등의 기성품)	용역계약
공급사 등록	회사소개서 또는 공사지명원 (법인등기부등본, 신용등급, 관련자격 현황 등)	○	○	○	○	○	○
	사업자 등록증 (Compay Registry)	○	○	○	○	○	○
	통장사본 (Bank information)	○	○	○	○	○	○
	최신 신용평가서 or 재무상태표(Balance sheet)	○	○	○	△		○
	윤리경영실천서약서	○	○	○	○	○	○
	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	○	○	○	○	○	○
	Supplier Profile Survey	○					
	공급사 일반 현황 (Supplier General Profile Survey)	○	○	○	○	○	○

### (7) 협력업체 사후평가

- ① 원, 부자재의 지속적인 품질 안정화를 위해 당사 품질시스템팀 주관으로 정기 품질감사를 실시하여, 협력업체의 품질시스템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.
- ② 정기 품질감사 개시 30일 전에 해당 업체에 평가일정을 서면 공유하고, 평가실시 15일 전에 평가 대상 협력사에 정기 평가 Sheet를 발송하여 사전에 자가진단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다음의 경우에 구매팀 주관으로 협력업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협력업체 등록 시 인증평가 점수에 따라 사후평가 진행
  - 부채 비율이 높고 부도의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
  - 빈번한 납기 연장 요청 및 동의없이 미납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

- 기타 경영상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때

#### 마.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

협력업체로 선정·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### 3-3.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

#### 가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

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다.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

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
#### 라.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

(1) 다음의 경우에 대해 협력업체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.

- ① 당사 제조 공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원,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당 Material Specification이 삭제된 경우
- ② 품질의 열등함 또는 정당한 경쟁에서 탈락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(24개월 이상) 사용하지 않을 경우  
※ 단,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탐함으로 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에 이를 이유로 품질 인증을 취소 할 수 없다.
- ③ 품질 및 납기, 가격,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
- ④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⑤ 부도, 휴업,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
- ⑥ 협력업체 사후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

- ⑦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- ⑧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- ⑨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

(2)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.

- ① 원가절감계획,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-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-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(다만,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)
-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

(3)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, 해당 협력업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

마.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한다.

#### **부칙**

이 업무지침은 '22. 9월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정 업무지침은 '23. 1월부터 시행한다.

이 수정 업무지침은 '23. 8월부터 시행한다.